

# 「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06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### 2. 제안이유

- 저출산·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, 학생의 학교 입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우리군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,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입학준비금 지원근거 (안 제3조)

-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(안 제4조~제5조)
- 지원절차 (안 제6조)
- 환수 (안 제7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입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,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-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와 입학준비금의 지급방법(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, 선불카드)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.
- 다만, 안 제6조제4항에서 “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,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지급 수단에 현금을 포함할 경우 지역경제 환류 효과가 제한될 우려와 입학준비금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. 결과적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.
- 따라서 안 제6조제4항 입학준비금 지급 수단에서 “현금” 을 제외하여, 사업목적과 조례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

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이에 따라 기존 신청서식 중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은 삭제하고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,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사항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□ **교육기본법**

**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 등)**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9. 24.>

**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1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 3. 21.>

□ **초·중등교육법**

**제2조(학교의 종류)**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